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기획재정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

◇ 제 · 개정 이유

재택당직 등 제도와 당직 운영상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당직 업무 관련 절차 개선 등 현행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

◇ 주요내용

가. 재택당직 운영 근거 등 마련(안 제5조제1항, 안 제6조 제1항 및 제2항, 안 제6조의 신설)

- 1) 당직에 재택당직을 포함하도록 하고
- 2) 당직을 2인 당직에서 당직실 근무 1인과 재택근무 1인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,
- 3) 재택당직은 업무 종료 후 당직실에서 1시간 이상 대기토록 함.

나. 당직업무 관련 절차 개선(안제 7조제3항, 안 제12조)

- 1) 당직근무 변경신청과 당직준무일지를 우리부 모에프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함

다. 주말 및 공휴일 휴무 근거 마련(안 제6조 제6항)

- 1) 근무종료일이 휴무일인 경우 10일이 되는 날까지 1일을 휴무할 수 있도록하고, 재택근무자는 휴무에서 제외하도록 함

라. 당직근무 면제신청 근거 마련(안제7조 제2항)

- 1) 당직근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도록 함

마. 기타 운영상 미비점 반영

- 1) 국가 공무원 복무규칙을 총리령 규칙에서 복무규칙으로 수정하고,
- 2) 당직근무 구역을 기재부 건물에서 기재부가 사용하는 전 사무실로 변경함